

2019년도 제1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19. 7. 10.(수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 - 심의위원 : 전용준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임진모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13건(안건번호 제2019-66104호~66203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본 건 심의대상물은 음악, 방송물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고 그외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도 없기 때문에,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B 위원 : <체르노빌> 등 방송 콘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
- C 위원 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음악 불법 복제 전송 건과 방송 불법 복제 전송 건들입니다. 가령, 음악 2002 (Anne-Marie), 음악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(다비치) 등과 방송 체르노빌(2019), 방송 고담시즌5(2019), 방송 하와이 파이브 오 시즌 8(2017), 방송 루시퍼(2016) 등으로 이들 사안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2019년 제11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7. 10.

분과위원장 전용준

위원 박성호

위원 임진모